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5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진성준·김민석·위성곤

허 영 · 민병덕 · 이학영

박홍근 • 채현일 • 김 윤

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 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소유자등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등"으로,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 집정보시스템 구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등" 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국토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빈집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유지 및 활용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연구기관 또는 빈집정비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공표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44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국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국가,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
	<u>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u>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
	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u>다.</u>
	②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
	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생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	2
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	
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렁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u>소유자등에</u>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	<u>게</u>
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	
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	
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	
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지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 ·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u>시·도지사</u>는 실태조사 결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u>
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 <u>지사</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u>국토</u>
교통부장관, 시장・군수등
<u>실</u> 태조사 또는 제15조
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u>은</u>
<u>.</u>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u> 군수등</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④ <u>시·도지사</u>는 빈집정보시스 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 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u>
지사
<u>' </u>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u>
ス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

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 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6	국토교	<u> </u> 통부	장관	및	시 •	도
지 시	<u>}</u>					
						- <u>.</u>

제15조의2(빈집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빈집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빈집의 정비・유지 및 활용에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연구기관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생략)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공표시기 및 방법과 제2 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

 법」을 준용한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u> , 시·도지/	<u> </u>

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지	} •
융자	하거나	융자를	- 알선	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 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sim	4.	(생	략)
----	--------	----	----	----

③ <u>국가, 시·도지사</u>
1. ~ 4. (현행과 같음)